

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18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1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세입·세출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·세출 결산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

- 세입 결산액 8조 4,687억 7,157만원
- 세출 결산액 7조 9,278억 5,073만원
- 차 인 잔 액 5,409억 2,083만원이며

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95억 5,024만원 및 사고이월액 1,422억 6,67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,191억 384만원임.

나. 채권현재액

2015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,919억 1,284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2,893억 262만원에 비하여 26억 1,0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
다. 채무결산

2015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1,882억 9,452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3,732억 2,515만원에 비하여 8,150억 6,937만원이 증가하였음

라. 예비비 지출

(1)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- 지출결정액 | 26억 216만원 |
| - 지출액 | 22억 8,715만원 |
| - 이월액 | 1억 6,336만원 |
| -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| 1억 5,165만원 |

바. 재무회계 결산

(1) 2015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4조 3,273억 5,456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3조 5,946억 397만원에 비하여 7,327억 5,0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그 결산내용은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- 유동자산 | 9,258억 6,174만원 |
| - 투자자산 | 2,689억 381만원 |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29조
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 제134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라. 지방재정법 제50조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마. 지방재정법 제52조

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
2.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바. 지방재정법 제53조

-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(이하 “지방회계기준“이라 한다)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,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사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아.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
-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회는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서울특별시 등“이라 한다)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1.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“이라 한다)
 2.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
3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·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 4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 5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-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른다.

자.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-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시장 등“이라 한다)이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.
- ③ 검사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.
-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. 다만,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○ 2015회계연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회계별 | 예산 현액 (A) | 세입·세출결산 | | | | | 채무 상환 | 다음년도이월비 | | | | 보조 금 집행 잔액 (F) | 순세계 잉여금 (G)=B-E- F | 집행잔액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차인 잔액 (B)=C-D | 세입 결산 (C) | 결산율 | 세출 결산 (D) | 결산율 | | 소계 (E) | 이월 률 | 명시 | 사고 | | | (H) =A-D-E | 잔액 률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교육비특별 회계 | 8,284,118 | 540,921 | 8,468,772 | 102.2% | 7,927,851 | 95.7% | 0 | 221,817 | 2.7% | 79,550 | 142,267 | 0 | 319,104 | 134,450 | 1.6% |

○ 채권현재액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회계별 | 2014년도말 현재액 | 당해연도 증·감 | | | 2015년도말 현재액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| | 계 | 증가 | 감소 | |
| 교육비특별회계 | 289,303 | 2,610 | 5,832 | 3,222 | 291,913 |

○ 채무결산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회계별 | 2014년도말 | 당해연도 증·감 | | | 2015년도말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|
| | | 계 | 증가 | 감소 | |
| 교육비특별회계 | 373,225 | 815,069 | 815,069 | 0 | 1,188,294 |